

형사정책연구소식

KIC BULLETIN

통권 제48호

1998년 7·8월호

권두언

· 손님을 따듯이 맞이합시다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조직위원장 이수성 2

범죄학대회 및 연구원 동정

4

형사정책 주요동향

6

제12회 세계 범죄학대회 안내

10

논 단

· 범죄피해자지원제도 : 독일의 민간지원단체 책임연구원 장규원 16
 · 불법 다단계판매와 피해예방 선임연구원 정진수 20
 · 발전범죄학 : 새로운 이론화? 연구원 박철현 24

자 료

· 일본의 하이테크범죄 대책프로그램 선임연구원 정 완 32

새로 들어온 책

36

현상퀴즈

38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학에 관한 본격적 교과서 등장
사법시험 고득점에 든든한 길잡이
국내외의 최신 이론과 자료를 망라한 역작
국책 형사정책 전문연구기관의 10년간 연구성과 축약

韓國刑事政策研究院 刊

刑事政策

4·6배판 / 668쪽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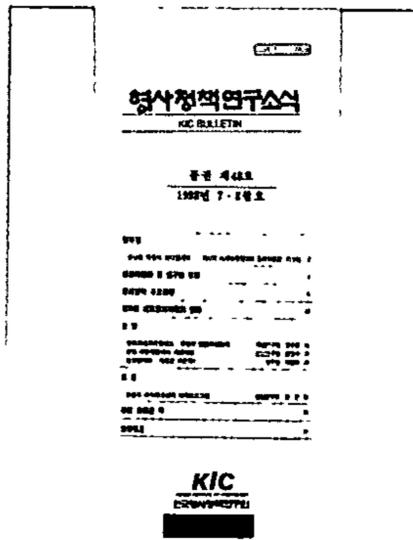
박상기(연세대 교수)
손동권(건국대 교수) 공저
이순래(원광대 교수)

최근 형사정책학의 비중과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서는 형사정책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업과 수험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고 범죄문제를 다루는 실무자들이 형사정책학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저술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세 사람의 저자가 전공분야별로 가장 최신의 이론과 자료를 활용하여 집필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형사정책에 관한 전문.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0년에 걸쳐 출간한 250여건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우리 형사정책학의 현주소를 밝혀주고 있다는 데에 있다. 아울러 외국의 최신자료까지 참조하여 최근의 세계적인 형사정책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7 - 140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TEL 571-0363, FAX 575-5290



형사정책연구소식

1998년 7·8월호 (통권 제48호)

권두언

· 손님을 따듯이 맞이합니다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조직위원장 이수성 2

범죄학대회 및 연구원 동정

4

형사정책 주요동향

6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안내

10

논 단

· 범죄피해자지원제도 : 독일의 민간지원단체 책임연구원 장규원 16
 · 불법 다단계판매와 피해예방 선임연구원 정진수 20
 · 발전범죄학 : 새로운 이론화? 연구원 박철현 24

자 료

· 일본의 하이테크범죄 대책프로그램 선임연구원 정 완 32

새로 들어온 책

36

현상퀴즈

38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48호
 등록·1990년 9월 14일 마 - 1611
 발행일·1998년 8월 17일
 발행인겸 편집인·공영규
 발행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우편번호 137-715 전화 575-5282/9
 인쇄처·화신문화(주) 전화 277-0624
 편집·출판실 / 전화 571-0363 / 비매품

ISBN 1227 - 7428



일찍이 孔子는 인생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먼 곳에 있는 벗이 찾아오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꼽았습니다(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공자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반겼고 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대접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 사는 집에서는 항상 사랑방을 개방하여 길손들을 반기고, 손님들의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학문과 인품이 출중한 손님이 오래 그 집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지에게도 박대를 하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꾸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통은 지역간의 이동이 많지 않던 때에 나름의 필요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연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인적, 가족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 수 성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조직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차원에서도 이어져 88서울올림픽 등의 국제행사에서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외국의 손님을 불편 없이 맞이하기 위하여 스스로는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자가용 홀짝제 운행, 외국손님에 대한 민박 등을 통하여 손님에 대하여 배려하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나라를 찾는 손님들에

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에 참석하러 이곳 서울에 오시는 각국의 손님들에게 한국적인 환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모두 그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로 이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대회가 개최되기 전 이 대회를 간단히

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회는 아시다시피 60년의 역사를 가진 대회로 유럽과 미주를 중심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브라질, 일본과 경합 끝에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지난 1996년이었으며,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대회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하여 국내외 학술단체, 학자, 실무자들이 단합하여 최선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 대회를 맡아 주관하게 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모든 실무를 맡아 대회를 치르게 되었음은 누구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범죄학회의 집행이사회 위원 여러분들, 특히 Kerner회장과 Picca사무총장, Sherman학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손님맞이에 있어 환대에만 열중하다 보면 자칫 過恭非禮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지 않는 지나친 환대는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IMF관리체제하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오는 손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허장성세로 우리의 모습을 왜곡하고 과장되게 보일 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술대회가 과연 호화스런 호텔에서

열려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학술대회는 대학을 빌려서 간소하게 하는데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하여는 대회를 준비하면서부터 많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고 각종 경비의 절감을 통해서 검소하면서도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세계에서 오신 학자, 실무자들이 각국, 각 문명권의 경험과 지식의 교환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이웃에게서 서로 배우는 지혜를 추구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님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할 때 우리의 진정한 힘과 친절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각국의 손님들이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직원여러분들과 관계자 및 참석자들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범죄학대회 개최준비 소식 및 연구원 동정

원장님 동정

공영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7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 연구원 초대원장을 역임한 정해창 전 법무부장관 등 역대 원장들과의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날 만찬은 세계범죄학대회의 준비경과 보고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각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3차 조직위원회 회의

세계범죄학대회 준비사무국은 1998년 7월 29일 (수) 인터컨티넨탈호텔 카멜리아룸에서 이수성 대회조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원 8명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부원장 외 5명이 참석하여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조직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대회 준비경과 및 향후 준비활동의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언론사 후원 결정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의 언론 홍보를 위하여 중앙일보와 한국방송공사(KBS)가 공식 후원언론사로 결정되었다. 중앙일보의 경우 이미 전시회 관련 홍보를 게재하였으며 사고 2회, 기획기사 1회, 대회기간 중 관련보도를 약속하였다. 한국방송공사는 대회를 전후하여 관련내용을 방송 보도할 예정이다.

제3차 대회참가안내서 발송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준비사무국에서는 최종 대회참가안내서 한국어판 500부와 불어·스페인어판 600부를 제작하여 대회 참가자 및 관련 인사에 각각 발송하였다.

이번 최종 안내서에는 대회 세부일정과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외국의 참가자들을 위하여 항공편과 호텔정보를 첨부 발송하였다.

형사사법기관 정보화관 개설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형사사법 정보화 현황을 소개하기 위하여 준비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98국제 보안·방범기기종합전에 형사사법기관 정보화관을 개설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형사사법기관 정보화관의 참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대검찰청
 - 전시내용 : 검찰영상정보시스템, 범죄정보공용망시스템, 증거자료분석시스템 등
- 대법원
 -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대법원 홈페이지 등
- 법제처
 - 국·영문법령검색시스템 등
- 경찰청
 - 미아찾기 영상정보시스템 등 5종

학술발표 세부일정 협의

최인섭 연구부장은 7월 8일(수)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의 워싱턴을 방문하여 국제범죄학회 학술분과위원장인 매릴랜드대학 셔만(Sherman) 교수를 면담하고,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8.24-8.29). 학술발표의 세부일정을 협의하고 귀국하였다.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개최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가 8월 24일-29일까지 인터컨티넨탈호텔과 코엑스(KOEX)에서 개최된다. 세계범죄학대회는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학술대회로 저명한 학자와 실무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범죄와 관련된 연구활동을 상호교류하며, 효과적인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형사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매 5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범죄학대회는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며 아울러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정되어 동 행사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회준비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각국으로부터의 수많은 대회참가신청과 더불어 국내외 형사사법 관련 학회 및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착실한 준비를 해 왔으며,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국내외 학자 및 실무가들의 많은 참여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세미나 참가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장해창)에서는 7월 6일(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IMF시대의 범죄문제와 대책」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 편의 주제가 발표되었는데 연구원에서는 최인섭 연구부장은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실업률과 범죄발생 추세'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세계범죄학대회 준비사무국의 이동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승용차 10부제 전원 참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량의 증가, 대기오염의 심화 등 교통문제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어 이미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이어서 민간부분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10부제 추진운동에 연구원에서는 참여단체로 등록을 하고 전직원이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다.

태극기사랑운동 동참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대대적인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태극기 사랑운동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직장과 가정에 태극기를 달고, 업무차량은 물론이고, 개인승용차에도 차량용 태극기를 달고 운행하는 등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마약관련 국제협력 동향

신 의 기(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대해 가입준비를 마치고 가을 정기국회에서 가입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약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1988년 유엔총회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현재 146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내법의 미비 등을 이유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으나 마약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마약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이 협약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가입국간 개별 범죄인인도조약이나 형사사범공조조약이 없더라도 마약범죄자의 인도 및 형사사범공조가 가능해진다. 또한 마약의 불법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재산의 몰수, 추징이 가능해지며 마약거래 수익을 돈세탁해 다른 재산으로 전환한 때에도 이들 재산에 대한 몰수가 가능해진다. 이 협약은 마약거래 수익 추적을 위해 범죄용의자의 은행계좌추적 및 거래 실적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마약사범을 적발한 후 이를 감시하에 운반하도록 하여 범죄조직의 전모를 파헤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형사사범공조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를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마약사범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국제 마약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 협약은 1988년 비엔나에서 채택되어 1990년 1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가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가입압력을 받아 왔다.

이와 같이 유엔 협약에 가입하는 것 외에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범죄 정보교류와 수사공조를 위한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사이에 「동북아시아 마약대책협의체」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6월 17일 제주에서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미국 등 15개국과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 인터폴의 마약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차 마약퇴치 국제협력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창설을 제의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이 이에 찬동함으로써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3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창설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8일 클린턴 미국대통령 등 30여개국 국가원수와 150여개국 정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유엔본부에서 시작된 유엔 마약 특별총회가 10일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와 마약의 불법 생산, 제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치선언문을 채택한 뒤 폐막되는 등 국제적으로 마약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성사된 것으로 향후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미국 범죄학대회 안내

민 수 홍(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미국범죄학회의 1998년도 연례모임이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디 씨에 있는 웨라톤 워싱턴 호텔에서 열린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번 대회의 주제는 범죄, 사법 및 정책: 과거의 진단과 미래에의 고찰 (Crime, Justice and Public Policy: Examining our Past and Envisioning our Future)로 잡았다 고 한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범죄학 이론, 연구방법과 정책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 범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고찰해 볼 뿐만 아니라 사법의 정의(definitions of justice)에 대한 토론도 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범죄통제와 예방을 위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접수된 논문의 수는 1,1918개이다.

1998년도 프로그램은 다음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1) 범죄에 대한 설명과 접근, 2) 연구방법, 3) 사회통제기관과 형사사법절차, 4) 입법, 정책과 대중, 5) 범죄성과 비행. 각 영역은 다시 구체적인 소분과로 구성된다. 지금현재 발표를 신청한 참가자는 모두 2,463명으로 5개 영역, 50개 분과, 522개 Session과 20개 탁상 논문발표회가 일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논문발표를 위한 제출마감일은 1998년 3월 31일 이었다. 이 이후에 논문발표를 희망하는 사람은 매트 징그레프(Matt Zingraff)에게 제출하면 된다. 늦게 제출한 사람들은 "탁상 논문발표 회

의(table session)"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 논문 발표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Matthew T. Zingraff, Program Co-Chair
Office of Research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Box 8101
Raleigh, NC 27695-8107
Phone : 919-513-1837
Fax: 919-515-7856
e-mail: matt_zingraff@ncsu.edu

또는

Particia L. McCall, Program Co-Chair
Department of Sociology & Anthropology
North Carolian State University
Box 8107
Raleigh, NC 27695 - 8107
Phone : 919 - 515 - 9010
Fax : 919 - 515 - 2610
e-mail : patty_mccall@ncsu.edu

형사정책을 보는 시각

- 성공적인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다 -

정 현 미(선임연구원, 법학박사)

Hoffmann-Riem, Zur Zukunft der Justizpolitik in Deutschland(Recht und Politik, 1998.3.)에서 일부만 인용

오늘날 경험적·규범적 기초가 변화되고 생활이 더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문제의 해결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법정책이 바로 사회정책이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은 그 한 부분으로 여겨질 뿐이며 그러한 전제하에서 정책이 수립된다.

우선 법정책은 법의 제한된 작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동체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문제는 법으로만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법과 재판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야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법과 법정책은 사회적 문제를 추출하고 잘못된 방향을 수정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말하자면 사회의 다른 통제수단이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법정책은 성공적인 사회정책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경우에는 법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특히 사회정책적 문제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투입하게 되는 형법의 경우에 그러하다.

오늘날 사회정책적 문제해결을 요하는 세 영역을 통하여 설명해 보자. 현재 사회의 위기현상인 실업과 수입감소는 생활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범죄로 빠지는 데 유리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실업자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뚜렷히 나타난다. 또한 청소년, 청년 및 젊은 성인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범죄성향이 더 크므로 젊은 연령층에 노동시장문제가 클수록 범죄영역에 빠질 위험이 더 커진다. 그러나 개별적 규범침해에 대한 대책인 형사정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업과 범죄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청소년정책도 그와 비슷하다. 형법적 개입을 우선하기보다 오히려 그 개입을 줄이는 정책이 동시에 최상의 형사정책이 된다. 약물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약물중독자를 형법적 제재와 집행으로 개선할 수 없으므로, 약물거래의 차단에 집중하고 약물중독자를 상태범인으로 몰지 않는 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듯이 형사정책은 사회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형사정책은 전통적으로 사회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투입되었지만, 그것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은 제한되어 있다. 형사정책을 통하여 문제의 원인이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근본문제의 해결없이는 어떠한 법정책으로도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정책 논의에서 위하적 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사회전반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최상의 형사정책이 될 것이다.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의 조직과 주요업무

정 완(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일본의 과학경찰연구소는 범죄과학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행하는 기관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연구, 실험 및 이를 응용한 감정과 검사, 범죄방지 및 소년비행방지에 대한 연구와 실험, 교통사고의 방지 기타 교통 경찰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무대상은 매우 광범위하여, 현재 의학, 치학, 이학, 약학, 공학, 농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는 약 90명의 연구직원이 각 전문영역에 배치되어 연구활동을 행하고 있다.

조 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소장, 부소장, 총무부

법과학 제1부(문서, 심리, 범의 제1, 2, 3연구실)

제2부(물리, 음성, 화재, 폭발, 기계 제1, 2연구실)

제3부(화학 제1, 2, 3, 4연구실)

방범소년부(보도, 환경, 범죄예방연구실)

교통부(교통규제, 교통안전, 차량운전연구실)

부속감정소

법과학연수소

주요 업무

연구소는 연구개발, 감정과 검사, 기술지도 등 세 가지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먼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매년 연구계획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감정기술의 확립, 감식기재의 개발, 범죄 및 비행의 원인 해명, 방법 대책, 교통의 안전과 원활에 관한 연구 등 경찰 활동에 공헌하고 있다.

감정과 검사는 “과학수사추진”의 목표가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각급 경찰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것에 대하여, 법과학 제1부, 제2부, 부속감정소에서 감정과 검사를 행하고 있다. 각급 경찰이 범죄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통화 및 총기, 탄환 등은 전부 연구소로 송부되어 감정되고 있다. 각급 경찰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청 등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는 경우도 있다.

한편 감식기술의 고도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고도의 전문기술자를 양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연구소에 설치된 법과학연수소에서, 각급 기관의 감식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전문분야마다 기술지도를 행하고 있다. 또 연구소는 각급 경찰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기술직원을 참가시켜 각종 감식과학연구발표회(범의, 화학, 심리, 문서, 화재, 폭발, 기계, 물리, 음성 부분)를 주최하여, 감식과 감정의 기술 및 이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기 타

이 밖에 연구논문 및 집무자료를 게재한 “과학경찰연구소 보고서”를 발행하여 기술교류를 행하고 있는바, 이 연구보고서는 각국에서 왕성하게 활용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안내

■ 대회개요

세계범죄학대회는 6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학술대회로 저명한 학자와 실무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범죄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활동을 상호교류하며,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에 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형사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1938년 제1회 이탈리아 로마대회 이후 매 5년마다 개최되어 이른바 『범죄학의 올림픽』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제11회 대회는 1993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었으며 약 1,200여명의 학자와 실무가 등이 대거 참여 한 바 있습니다.

제12회 대회는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며 아울러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정되어 동 행사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큰 만큼 각 분야에서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 전 국무총리 이수성
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 차장
재정경제부 차관
법무부 차관
교육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국내학술위원회

위원장 : 이형국 연세대학교 교수
위원 : 김준호 고려대학교 교수
박광배 충북대학교 교수
배임호 숭실대학교 교수
백승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양문승 원광대학교 교수
오영근 한양대학교 교수
이백철 경기대학교 교수
차경택 경찰대학 교관
최인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부장
하태훈 홍익대학교 교수
한덕렬 법원행정처 판사
한상대 법무부 검사

대회주제

변화하는 세계속의 범죄와 형사정책 :
아시아 및 세계적 관점
Crime & Justice in a Changing World :
Asian & Global Perspective

■ **대회일정**

일시 : 1998.8.24(월) - 8.29(토)

장소 : 인터컨티넨탈호텔/

한국종합전시장(KOEX)

	16 : 45 - 17 : 00	휴식		
	17 : 00 - 18 : 30	논문발표회 및 원탁토론회 III		
	17 : 00 - 18 : 00	특별강연회		
	목요일 09 : 00 - 10 : 30	총회 #3-1*		
	(8.27) 10 : 30 - 11 : 00	휴식		
	11 : 00 - 12 : 30	총회 #3-2*		
	12 : 30 - 13 : 30	점심		
	13 : 30 - 19 : 00	현장견학		
	금요일 09 : 00 - 10 : 30	총회 #4-1*		
	(8.28) 10 : 30 - 11 : 00	휴식		
	11 : 00 - 12 : 30	총회 #4-2*		
	12 : 30 - 13 : 30	점심		
	13 : 30 - 15 : 00	논문발표회 및 원탁토론회 I		
	15 : 00 - 15 : 15	휴식		
	15 : 15 - 16 : 45	논문발표회 및 원탁토론회 II		
	16 : 45 - 17 : 00	휴식		
	17 : 00 - 18 : 30	논문발표회 및 원탁토론회 III		
	17 : 00 - 18 : 00	특별강연회		
	19 : 00 - 21 : 00	축하연회		
월요일	10 : 00 - 16 : 00	등록		
(8.24)	16 : 00 - 18 : 00	개회식*		
	18 : 00 - 20 : 00	개회연회		
화요일	09 : 00 - 10 : 30	총회 #1-1*		
(8.25)	10 : 30 - 11 : 00	휴식		
	11 : 00 - 12 : 30	총회 #1-2*		
	12 : 30 - 13 : 30	점심		
	13 : 30 - 15 : 00	논문발표회 I		
	15 : 00 - 15 : 15	휴식		
	15 : 15 - 16 : 45	논문발표회 II		
	16 : 45 - 17 : 00	휴식		
	17 : 00 - 18 : 30	논문발표회 III		
	17 : 00 - 18 : 00	특별강연회		
	19 : 00 - 21 : 00	축하연회		
수요일	09 : 00 - 10 : 30	총회 #2-1*		
(8.26)	10 : 30 - 11 : 00	휴식		
	11 : 00 - 12 : 30	총회 #2-2*		
	12 : 30 - 13 : 30	점심		
	13 : 30 - 15 : 00	논문발표회 및 원탁토론회 I		
	15 : 00 - 15 : 15	휴식		
	15 : 15 - 16 : 45	논문발표회 및 원탁토론회 II		
	16 : 45 - 17 : 00	휴식		
	17 : 00 - 18 : 30	논문발표회 및 원탁토론회 III		
	17 : 00 - 18 : 00	특별강연회		
	19 : 00 - 21 : 00	송별연회		
토요일	09 : 00 - 12 : 00	폐회식(세계법 죄학의 미래)*		
(8.29)	12 : 00 - 13 : 00	ISC총회*		
	13 : 00 - 15 : 00	폐막다과		

* 표시된 일정은 한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학술프로그램

총회 주제

- 총회 1 21세기 범죄와 형사정책에 있어 아시아범죄학의 의의
 총회 2 범죄의 원인과 예방 : 문화, 지역사회, 가족, 학교
 총회 3 형사정책의 세계적 추세 : 경찰, 검찰, 법원, 교정
 총회 4 경험적 범죄학과 형사정책

오전 : 총회

- 매일 5-6명이 대회주제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를 발표한 후 사전에 선정한 토론자 또는 일반참가자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하게 됩니다.
- 대회기간 중 총 20여명이 주제발표를 하며 한국에서는 이형국 연세대 법대학장 (총회 1), 한부환 서울고검 차장검사 (총회 3), 배임호 숭실대교수 (총회 4)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14명이 교대로 사회를 진행하며 한국사회자로는 정해창 전법무장관, 김동일 이대교수, 정성진 국민대교수, 김종화 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회는 화요일(8.25)에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며, 수요일(8.26)부터는 KOEX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대회참가자 모두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총회시간 중에는 다른 논문발표회나 원탁토론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후 : 논문발표회, 원탁토론회, 특별강연회

◇ 논문발표회(Paper Session)

-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간 매일 20개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총 500여편이 발표됩니다.
- 각 발표는 30분 정도로 연사의 논문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요일과 수요일에 대검찰청의 협조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특별세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원탁토론회(Roundtable Session)

- 수요일과 금요일 2일간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0정도씩 앉을 수 있는 원탁 50여 개에서 관심분야가 비슷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프로그램입니다.
- 각 발표는 30분 정도로 간략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별강연회(Special Address Session)

-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17:00-18:00 사이에 4-5개의 회의실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 각 회의실에서 발표자 1-2명이 1시간동안 대회공식언어 중 하나로 발표합니다.
- 한국에서는 김준호 고려대 교수(8. 26. 수)가 발표예정입니다.

■ 현장견학프로그램

1998년 8월 27일(목요일) 오후에는 대회참가자 모두가 현장견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학술프로그램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견학 대상시설까지의 모든 수송편의와 현장견학에 필요한 사전준비는 대회준비사무국에서 담당하며, 대회참가자의 등록된 동반가족들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현장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견학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신청서에 기재하기 바랍니다.

현장견학 시설

- | | |
|-------------|-----------|
| · 대법원 | · 대검찰청 |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 직업훈련교도소 |
| · 개방교도소 | · 소년교도소 |

대회참가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견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견학할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본인의 희망과는 다르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사교행사

개회연회(8월 24일, 월요일)

개회식 직후인 18:00 - 20:00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2층)에서 개최됩니다. 개회연회에서는 부페와 음료 등이 제공되며 등록된 대회참가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축하연회(8월 25일, 화요일)

8월 25일 19:00 - 21:00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2층)에서 개최됩니다. 식사와 음료 등이 제공되며 전통예술공연 및 궁중의상패션쇼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입장료는 1인당 5만원이며 간편한 복장으로 참석할 수 있고, 참석인원이 50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필히 사전예약을 해야 합니다.

송별연회(8월 28일, 금요일)

대회폐막 하루 전인 8월 28일 19:00 - 21:00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2층)에서 개최됩니다. 부페와 음료 등이 제공되며 간단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대회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댄스파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대회참가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폐막다과(8월 29일, 토요일)

폐막다과는 대회 마지막 날 13:00 - 15:00에 한국종합전시장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음료와 간단한 스낵이 제공되며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프로그램

'98 국제보안·방범기기 종합전

1998. 8. 25 (화)부터 8. 29 (토)까지 5일간 특별프로그램으로서 보안·방범관련 전시회

를 개최합니다. 전시품목으로는 경비·경호 시스템, 홈 시큐리티, 도난방지시스템, 컴퓨터보안, 출입통제시스템, 경찰장비, 호신용품, 감시 및 수사시스템, 보안·방법관련 전문 미디어 등이 될 것입니다.

한국 형사사법기관 정보화 전시회

전세계 70여개 국의 학자 및 형사사법관련 실무자에게 한국형사사법기관의 선진정보화 현황을 소개하는『한국 형사사법기관 정보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대검찰청의 검찰영상정보시스템, 형사사법기관 간 범죄정보공용망시스템, 증거자료분석시스템, 검찰예규검색시스템, 대검찰청 및 대검중수부 홈페이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법제처의 법령검색시스템(국문, 영문), 대한민국 법령집과 경찰청의 지문감식시스템 등이 전시 될 것입니다.

■ 대회참가절차

등록비

구 분		등록비
전체등록	일반참가자	8 만원
	동반자	5 만원
	학 생	4 만원

동반자의 경우 학술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대

회 프로그램(현장견학프로그램, 개최연회, 송별연회, 폐막다과 등)에 일반참가자와 마찬가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비 반환

반환청구일	내 용
8월 23일 까지	70% 반환
8월 24일 부터	반환하지 않음

등록 및 안내

◇ 대회기간 전 사전등록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의 지불방법에 따라 등록비를 대회준비사무국에 송부하시면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의 참가자로 정식 등록됩니다.

◇ 대회기간 중 현장등록

인터컨티넨탈 호텔 1층에 등록 및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여기에서 모든 참석자들의 등록확인 및 현장등록을 하며 명찰 및 대회프로그램북 등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 담긴 가방을 배부합니다. 아울러 관광, 호텔, 셔틀버스 운행 및 항공편 등에 대한 안내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대회 참가신청서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다음의 주소로 우송하여 주십시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준비사무국 / 137 - 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전화 : 02-571-0365 / 전송 : 02-571-7487, 02-3462-4673

1. 참가자 인적사항

성명(국문)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전송 _____ 성별 _____

2. 동반자 인적사항

3. 희망 현장견학프로그램

- | | | |
|----------------------------------|-----------------------------------|------------------------------------|
| <input type="checkbox"/> 대법원 | <input type="checkbox"/> 대검찰청 | <input type="checkbox"/>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 <input type="checkbox"/> 영등포 교도소 | <input type="checkbox"/> 천안 개방교도소 | <input type="checkbox"/> 천안 소년교도소 |

4. 희망 사교행사프로그램(원하시는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개회연회 | <input type="checkbox"/> 송별연회 | <input type="checkbox"/> 폐막연회 |
| <input type="checkbox"/> 식사와 공연이 있는 축하연회(Gala Banquet: 50,000원 별도지불) | | |

5. 등록비 지불

등록비 80,000원 + Gala Banquet _____ 원 = _____ 원

6. 지불방법

- 계좌송금 국민은행 814-01-0392-874
(예금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준비사무국, 수수료 본인부담)
- 국민비자 또는 국민마스터카드:

번호 _____ 유효만기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범죄피해자지원제도 : 독일의 민간지원단체 "Weißer Ring"

독일에서의 피해자지원은 1976년 피해자보상법(Opferentschädigungsgesetz), 1986년 피해자보호법(Opferschutzgesetz)의 제정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강조되고, 1994년 범죄방지법(Verbrechensbekämpfungsgesetz)의 시행과 함께 형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Täter-Opfer-Ausgleich)·손해원상회복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회적인 규모로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적 노력 이외에 민간 차원에서의 활동으로는 'Weißer Ring' 운동을 들 수 있다.¹⁾



장 규 원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범죄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모인 소수의 그룹이었던 것이 점차로 지부의 수를 늘려가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공익단체로 인정받으면서 본부와 각 지부의 소재지 관할 구법원(區法院, Amtsgericht)에서 징수한 '교통사건 관련 벌금'을 배분 받는 단체가 되었고, 이로써 회원의 회비수입, 독지가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고 있다. 동서독의 통일 이후, 구동독 각 주에 지부를 설치해 1997년 현재는 지부 수가 400개, 회원 수는 약 70,000명에 이르며, 연간 약 8,000건의 지원을 하고 있다. 1995·96년의 연보에 의하면 가장 활발한 것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Nordrhein-Westfalen) 주로, 회원 약 13,000명, 바이에른(Bayern) 주는 약 11,000명,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는

1. Weißer Ring의 현황

1) Weißer Ring(이하 '협회'라 한다)은 1976년 9월 24일 TV 저널리스트인 에드워드 침머만(Eduard Zimmermann)를 중심으로 범

1) G.Kaiser/H.Kury/H.-J.Albrecht, Victims and Criminal Justice, 1991(일본어 번역으로는 宮澤浩一·田口守一·高橋則夫 編譯, '犯罪被害者と刑事司法', 成文堂, 1995 참조); D.Eppenstein, Begrenzung des Opferentschädigungsgesetz auf Angriffsdelikte- ein Redaktionsfehler? in: Weisser Ring (Hrsg.), Opferentschädigungsgesetz, 1995 참조.

약 8,000명,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는 약 7,000명이다. 그 배경에는 이들 주가 비교적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일거리를 찾아 유입되었다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구 동독의 주들은 모두 회원수가 400~500명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파탄한 기업이 재건 중에 있고, 실업률이 높은 사회상황 때문일 것이다. 협회의 창설자인 침머만은 명예회장으로 있고, 회장은 막스 헤르베르크(Max Herberg), 사무국장은 디이터 엠펜슈타인(Dieter Eppenstein)이 임원으로 협회를 이끌고 있다(安部哲夫, 1998:60).

회원은 60 마르크의 연회비를 내고 협회 활동을 지원하며, 본부의 소재지인 마인쯔에서 매년 열리는 총회와 연구회에 출석하여 국내외 피해자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회보인 'Weißer Ring'을 통해 그 활동상황을 알게되며, 회원 중에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원봉사자로서 피해자 지원활동에 참가하고 있는데 그 수는 약 2,000명이라고 한다.

2) 1995년 회계보고에 따르면 회비수입이 약 280만 마르크, 기부금 수입이 약 1,100만 마르크, 교통사건 관련 벌금 할당액으로 지급 받은 금액이 약 300만 마르크이다. 최근에는 유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 세법상 우대조치로 인정받아 그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1995년에는 약 600만 마르크의 기부금이 모였다. 그 외의 수입을 합하면 연간 1,340만 마르크이다. 여기에서 사무실 유

지비, 직원 급여, 그 밖의 필요경비 외에 피해자지원을 위한 경비(각종 출판물, 포스터 등 이외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치료비나 카운슬링 비용, 변호사의 상담료 보조)가 지급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는 1986년의 '피해자보호법'으로 상당한 위치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일정 한도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건의 법적 처리에 관해 의견을 말하며,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이의를 말할 수 있으며, 현재 당한 피해에 대한 손해회복 신청권도 인정되고 있다. 협회가 피해자에게 배포하는 자료 중에 튜빙겐(Tübingen) 대학의 케르너(H.-J. Kerner) 교수가 쓴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 피해자보호법의 시행 이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개관'이라는 소책자가 있다. 이 책은 법률학 지식이 없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으며,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해 상세하게 관련조문을 부록으로 실고 있다. 이 자료는 1987년에 초판으로 5,000부를 발행했고, 현재는 6판이 나왔으며, 지금까지 12만 5,000부를 펴냈다.

3) 협회의 활동은 ①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피해자에 대한 직접급부나 구원조치 이외에 피해자의 국비·공비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② 범죄예방에 관한 공적 기관의 활동지원(예방조치에 관한 연구와 실험), ③ 시민들에 대해 범죄로 위해를 받을 위험성에 대한 계몽과 조언(안전확보를 위한 방호설비의 기술적 개량에

관한 설명), ④ 피해를 받기 쉬운 시민에 대한 방법교육과 지원, ⑤ 일반인에 대한 방법 지식의 보급 등이다.

1977년 창간된 회지 'Weißer Ring'은 1년에 6회 발행하고 있다. 최근의 범죄와 피해 동향, 피해구제의 사례, 차안에서 피해를 목격한 경우에 주위의 도움을 청하기 등 방법 지식의 보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담고있다. 예컨대 차량 내부에 대한 절도를 막기 위해 차안에 현금·귀중품을 두지 말고, 자전거의 열쇠 분실이나 락카나 핸드백의 잠금쇠를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가방에 지갑을 아무렇게나 넣지 않도록 하며, 호텔 방에 현금이나 귀금속을 부주의하게 놓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 외에 약속 없이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금방 문을 열어주지 말고 도어 체인을 건 채로 응대하고, 강매에 대해서는 곧바로 거절할 것, 물건판매·투자나 용자에 관한 권유에 접하는 경우에는 계약조항을 주의해 읽고, 특히 작은 글자로 인쇄되어 있는 약정은 사기수법으로 악용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조언을 얻을 것 등 세세한 주의가 기재되어 있다. 유아·아동·소년에 대한 성적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독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피해자 중에는 소녀뿐만 아니라 소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연령에 상응하는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성범죄의 수법을 소녀와 소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의지에 반하는 성적 공격을 당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거부의 태도를 보일 것을 권하고 있다.

2. Weißer Ring의 활동

1) 오늘날 매스컴의 역할은 매우 크다. 특히 범죄피해자를 범죄자의 공격으로부터 적시에 적절하게 지키기 위한 예방적 활동은 매스컴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적지 않은 범죄자는 시민의 자유를 악용해 자신의 범죄적 욕망을 충족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리고 일부 매스컴에서는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여 범죄자의 편을 들거나(조선일보 1998.7.27. 13면 참조), 피해자·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규제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고발해 결과적으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일이 있다. 그 후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반발을 받으면 이번에는 태도를 일변해 사회적 분노를 증폭시켜 전하고,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동정을 강조하면서 피의자·피고인에게 흑독할 정도로 과도한 비난을 퍼붓기도 한다.

2) 따라서 범죄나 피해와 관련된 지원조직은 항상 적절한 언론담당자를 배치하고 홍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마인쓰의 협회는 매스컴을 위한 홍보자료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협회의 사명, 목적, 실천활동 등. 협회의 활동 전체에 관한 개관을 조목별로 소개하고 있으며, ② 독일 전역에 걸친 전화통신망. 콜렉트콜의 번호가 소개되어 있다. ③ 현대사회에 범죄나 소년비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서 시민이 얼마나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으며, ④ 협회는 국선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법률부조제도로 국비에 의한 변호사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⑥ 사법에의 주장으로는 피해자에 대해 벌금의 할당액을 늘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⑦ 가벼운 (형사)정책이라도 운용을 잘못하면 피해자를 낳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⑧ 국가의 보상은 충실한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⑨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²⁾ ⑩ 성적 남용의 피해자 보호, 특히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에 대한 국비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⑪ 협회는 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위난상태에 놓여 있어 원조한자에 대한 국가의 정보제공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었어도 여전히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제로는 대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한정되어 있다. 현 상황에 대한 개선요구를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외에 ⑫ 예방은 최상의 피해자 보호이다, ⑬ 협회는 절도에 대한 경찰의 투쟁을 원조한다, ⑭ 어린이에 대한 성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⑮ 못 본체 하지 말라. 소녀와 소년에 대한 성범죄 대책 팸플렛, ⑯ 폭력을 허용하지 마라. 소년범죄의 증가에 대항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라, ⑰ 피해 후의 불안. 주거에 대한 침입절도와 심리적 피해에 관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매스컴용 홍보자료는 현대 독일사회가 직면한 범죄 정세 하에서의 제약이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이목을 모은 중대사건에 촉발되어 협회로서 태도표명을 밝히고 있는 출판물이므로 곧바로 우리 사회에서 참고로 삼기에 꺼려지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평화의 확립을 바라는 피해자를 위한 민간지원단체로서 세상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G. Kaiser · H. Kury · H.-J. Albrecht, *Victims and Criminal Justice*, 1991(宮澤·田口·高橋 編譯, '犯罪被害者と刑事司法', 成文堂, 1995.).
- G. Kaiser, *Viktimologie*, in: FS für H.Schüller-Springorum, 1993.
- H. Schöch(Hrsg.), *Wiedergutmachung und Strafrecht*, 1987.
- B. Villmow/B. Plemper, *Praxis der Opferentschädigung*, 1989.
- Th. Weigend, *Deliktsoffer und Strafverfahren*, 1989.
- 宮澤浩一, '白い環の近況', 罪と罰 33卷 4號, 1996.
- 安部哲夫, 'ドイツにおける被害者の救済・保護・支援', 被害者學研究(第8號), 日本被害者學會, 1998.

2) 독일의 피해자보상법(Opferentschädigungsgesetz, 1976)은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 Eduard Kunz/Gerhard Zellner, *Opferentschädigungsgesetz*, 3.Aufl., 1995, 부록 206면 이하 참조.

불법 다단계판매와 피해예방

1. 글머리에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특정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8호 참조).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다단계판매를 합법화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일정한 금지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경우를 통상 피라미드판매라고 부른다.

그동안 불법 다단계판매가 사기적인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IMF와 고실업시대를 맞아 불법 다단계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이 취업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주로 젊은 계층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어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이들의 함정에 빠져 학업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진수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불법 다단계판매 내지 피라미드판매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민·형사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전에 주의를 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불법 다단계판매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와 불법적인 피라미드판매의 구별방법을 숙지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의 구별문제를 포

함하여 불법 다단계판매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단계판매는 1930년대 미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처음 고안해 낸 사람은 마이팅거라는 세일즈맨과 윌리엄 캐셀베리라는 심리학자라고 한다. 이러한 다단계판매나 나타나게 된 배경은 대량생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산된 물건이 팔리지 않는 사태가 급증하여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이 필요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는 형태로 유통구조가 변모해 가면서 중간유통업에 종사하던 다수의 사람들이 다단계판매에 투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단계판매는 ① 광고비와 중간유통마진을 축소시킬 수 있고 ②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으며 ③ 마진을 소비자에게 이윤분배를 통하여 환원시키고 ④ 판매망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다단계판매가 이러한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① 판매를 증가시키고 조직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부실·과대한 선전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② 상품의 품질, 가격, 성능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③ 친구·친척 등이 판매의 주된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계약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④ 처음에는 회사의 선전에 현혹되어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물건이 팔리지 않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가 어렵다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피라미드판매는 다단계판매와는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피라미드판매는 1950-1970년대에 미국에서 나타났으며 최초에는 피라미드시스템이라는 금전배당조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피라미드시스템이란 상품의 판매는 전제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여 한 사람에게 돈을 모아주는 금전배당조직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시스템의 구성은 최초의 일인이 하위에 두사람을 모집하고 그 두사람도 각각 자신의 하위에 두사람씩 모집하여 총 다섯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스템이 완성되면 첫 단계

에 한 사람, 두 번째단계에 두 사람, 세 번째 네 사람, 네 번째 여덟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열여섯 사람이 되고 조직의 총구성원은 32명이 된다. 어떤 사람이 이 피라미드조직 내에 들어가려면 일정한 금액(예컨대 백만원)의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사람이 지불하는 돈은 최초에 이 시스템을 시작한 우두머리(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절반이 돌아가고 자신을 끌어들이는 바로 윗단계의 사람에게 나머지 절반이 돌아간다. 이렇게 하여 피라미드조직의 하나가 완전히 채워지면 맨 처음에 이 시스템을 만든 조직의 발기인은 1천 6백만원을 벌게 된다. 즉 이 돈은 맨 아래의 다섯 번째 단계 16명이 낸 1천 6백만원중 절반인 8백만원과, 그 중간단계(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16명이 낸 1천 6백만원중 절반인 8백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렇게 하나의 피라미드가 채워지면 맨 윗단계의 사람은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고 두 번째 단계의 두사람이 새로이 조직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때는 한개의 피라미드조직이 두 개의 조직으로 분화되는 셈이 된다.

결국 이 피라미드조직에 백만원을 내고 가입한 사람은 그 피라미드가 모두 채워지고 자신이 그 정점에 이르러 이탈할 때에는 투자한 금액의 16배, 즉 원금을 제외한 1천 5백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얼핏봐서 이 피라미드시스템은 완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시스템이 붕괴되어 손해를 보는 다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피라미드시스템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자 70년대 초반부터 단속을 크게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피라미드시스템은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한 와중에서 일부 피라미드조직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면서 기존의 다단계판매기법을 변형된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즉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겉으로는 상품의 판매를 위장한 합법적인 회사로 가장하여 사실상의 피라미드시스템을 운영한 것이다.

피라미드판매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명목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이므로 취급되는 상품의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매우 비싸다. 즉 피라미드조직에서는 대체로 고가의 내구재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시중가격보다 1.5배 내지 2배정도 비싼 가격으로 거래한다. 예컨대 시중에서 100만원쯤에 팔리는 제품이라면, 이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150만원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통상 시중에서 팔리는 상품의 유통마진이 50% 정도되므로 상품 1개당 100만원 정도의 마진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마진으로 실질적으로는 피라미드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피라미드판매는 ① 혈연·학연·지연 등에 의한 기본적 인간관계까지 깨뜨리고 약화시키며 ②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기망적 수단이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③ 강한 성취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는 젊은이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좌절감만을 안겨주며 ④ 필연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의 구별 및 피해예방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는 마치 '버섯' 과 '독버섯' 의 관계처럼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서로 구별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라미드판매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피라미드판매는 '사람장사' 를 한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에 의해 마진을 남긴다. 그러나 피라미드판매는 본질적으로 금전배당조직에 다단계판매를 외관을 씌운 것이다. 그러므로 피라미드판매는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 자체에 의해 이익을 챙기게 된다. 그리고 취급되는 제품의 가격도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다.

② 물건의 효용가치가 없다: 피라미드조직에서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게 보통이며, 거래되는 물건은 실제 소비자 수요가 거의 없는 것이거나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품질에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판매가 힘든 제품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건강보조식품, 자기침구류, 적외선 미용기구 등이다. 그리고 자체브랜드, 즉 자체 생산공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③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다: 가입비·교육비·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고액을 요구하며, 이렇게 얻어진 부당한 마진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에게 배당함으로써 사람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곧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④ 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형태이다: 조직의 상층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아래 조직으로 내려갈수록 노력에 비해 대가가 적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피라미드판매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라미드판매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마 내가 피라미드판매에 속을까 자신을 하지만 업체들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이어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빼기 어렵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던 친구나 먼 친척으로부터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연락이 와 함께 회사로 가자고 유인할 때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가입할 때도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1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내구재를 파는 경우는 피라미드판매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악덕 피라미드 업체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 및 상품을 회사에 반송해야 한다.

상품을 돌려준 뒤 다음 영업일까지 환불이 되지 않으면 구매계약서, 청약철회서 등을 갖춰 시·도와 검찰, 경찰,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 등에 고발한다.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회사가 등록돼 있는지 먼저 알아본다. 그리고 기간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다.

4. 맺음말

불법 다단계판매 내지 피라미드판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주의하면 큰문제는 없다. 요컨대 불법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무엇보다 IMF시대에 위축된 소비심리 등을 고려해 쉽사리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기망적인 수단에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미 피해를 본 경우에도 무작정 자포자기 보다는 수사기관이나 시민단체에 문의하여 합법적인 구제절차를 찾아보도록 함과 동시에 언론기관과 관계당국에서도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계몽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유경쟁과 계약자유가 보장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다단계판매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성질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모두 다단계판매라는 개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회사에게 불의의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용어사용의 문제에 있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발전범죄학 : 새로운 이론화?

범죄학이론은 범죄경력의 종적인 과정에 대한 관심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범죄경력에 대한 일정부분의 함의는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학이론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긴장이론, 차별접촉이론, 통제이론, 학습이론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범죄경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범죄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잠재적 요소(latent factor)가 시간의 흐름에 대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단계별 설명이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Gottfredson과 Hirschi의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기존의 범죄학적 설명에서 나타나는 함의를 재구성하여 발전과정을 이론화하려는 입장으로, 90년을 전후하여 경험적인 논쟁의 수준에서 논의되다가 최근에 와서야 하나의 이론적 입장으로 정리되었다(예를 들면 Vold et al., 1998 17장을 참조). 이상의 세 가지 이론적 입장 중에, 여기서는 범죄경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두



박철현
(연구원)

번째와 세 번째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일반이론(general theory) : population heterogeneity, ontogenetic model

이 절에서 논의할 이론들은 모두 범죄를 설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이 요인은 시간의 흐름에 대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범죄경력 발전의 어떤 과정에서도 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범죄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즉 범죄경력의 시작, 발전, 지속 그리고 중단이 하나의 잠재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발전적 이론화와 범죄경력 연구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형성된 범죄성향의 개인간 차이이며 따라서 범죄나 범죄발전의 과정은 이러한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입장을 모집단 이질론(population heterogeneity)이라고 하기도 하고(Nagin and Paternoster, 1991; Nagin and Farrington, 1992), 발생학적 모델(ontogenetic model)로 지칭되기도 한다(Dannefer, 1984).

갓프레더슨과 허쉬(Gottfredson and Hirschi, 1990)는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범죄의 일반이론(A General Theory of Crime, 1990)』이라는 저서를 통해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개인의 자기통제력(self-control)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개인의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낮은 자기통제력은 아주 어릴적에 형성되어 이후에는 어떤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한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원인이 되는 것은 어릴적의 부모의 비일관적이고 부적절한 양육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갓프레더슨과 허쉬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나타내는 징후로서 다음의 여섯 가지 경향을 들고 있다. 첫째, 눈앞의 욕구충족에 집착하는 경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바로(here and now)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즐긴다. 둘째,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손쉬운 수단을 통한 욕구충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따라서 부지런하고 끈기있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험과 스릴을 즐기며, 매우 활동적이며 언어적 표현보다는 육체적 표현을 즐긴다. 넷째,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대부분이 혼인 상태나 친구관계 그리고 직업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다섯째,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지적, 학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여섯째,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따라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p. 89). 요약하면,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충동적이며, 무감각하며, 정신적이기보다는 육체적이며, 모험을 즐기며, 근시안적이며, 언어적인 수단보다는 육체적인 수단을 선호하며,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범죄에 개입되기 쉬운 연령에 이르기 전에 구별될 수 있고, 또 이것은 생애를 통해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낮은 자기통제력을 범죄를 설명하는 유용하고 안정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pp.90-91).

갓프레더슨과 허쉬는 범죄경력학의 발전과정에 대해, 자기통제력의 발현(manifestation)의 다양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범죄가 어떠한 범죄로 전문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일반화의 경향을 띠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화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행인이 왕래하는 쇼핑지역 뒤에 사는 범죄자는 자기통제력의 특징 중의 하나인 쉬운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낄치기(purse snatching)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체로 범죄자들은 어떠한 범죄로 전문화하지 않고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된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pp. 91-92). 또한 이들의 자기통제이론에서 개인의 자기통제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범죄가 심각화되기 보다는 비슷한 정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범죄를 계속하는 현상을 예측해 볼 수 있다.

Rowe와 그의 동료들은 일반이론적 입장에서 잠재특성모델(latent trait model)을 제시하

고 범죄경력모델(criminal career model)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모수들(parameters, 예를 들면 이른 범죄경력의 진입, 늦은 중단, 높은 개인범죄율 등)이 하나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범죄성향의 차원(dimension)에 따라서 개인적 차이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범죄경력 모델이 경력범죄자집단과 비경력범죄자 집단의 구분하는데 반해, 잠재특성 모델은 범죄성향이 어떤 집단에 따라 단절적인 형태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범죄경력을 시작하도록 하는 한 과정과 보다 중한 범죄를 초래하는 다른 과정을 가정하기보다는 하나의 인과과정(cause-effect)이 모든 차원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요약하면 범죄경력에 관한 범죄의 일반이론은 범죄경력의 모든 과정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개인범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범죄자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범죄를 유발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요인의 매우 다양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범죄경력의 전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 요인은 시간의 흐름에 대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의 심각화는 부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발전이론(developmental theory) : state dependence, stepping-stone theory, criminal career model

최근 범죄학 분야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조류는 발전범죄학(developmental criminology)

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것으로, 주로 이것은 개인의 범죄경력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발전하는 과정을 주로 이론화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이 어떤 생애과정(life-course)의 궤적(pathway)을 따라 발전하는 것이든, 아니면 연속선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발전범죄학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 범죄학의 한 조류는 이 과정을 이론화하려는 것이다.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이 갖고 있는 암묵적인 가정은 어떤 범죄의 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인, 즉 어떤 범죄자가 범죄경력을 시작하게 하는 요인은 그가 범죄경력을 지속하고 중단하는데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범죄학의 가정은 이러한 범죄경력의 시작, 지속, 그리고 중단이 하나의 동일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범죄경력의 발전과정을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는 일반이론과는 달리 발전이론들은 어떤 국면들을 나누어서 상이한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가지고 발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모두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범죄경력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입장은 상황의존론(state dependence)으로 지칭되기도 하고(Nagin and Paternoster, 1991), 디딤돌을 차례대로 밟고 간다는 의미에서 디딤돌이론(stepping-stone theory)으로 불려지기도 한다(Farrington, 1982, 1986).

똥베리에 의하면 전통적 범죄학 이론은 대부분 발전적 결과 또는 생애과정의 결과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고 한다. 첫째, 비발전적 관점은 범죄행동의 많은 흥미롭

고 중요한 차원 - 확산도, 범죄경력 시작, 지속, 범죄의 심각화 및 완화, 범죄경력의 은퇴 등 - 을 설명하지 못했다. 둘째, 비발전적 관점은 어떤 범죄자 집단의 상이한 인과구조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범죄유형별로 상이한 인과적 발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력집단별로 상이한 인과구조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셋째, 비발전적 설명들은 범죄행동을 선행하는 요인과 범죄행동의 결과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는다. 범죄행동을 선행하는 요인들과 단지 일부의 청소년을 지속적인 범죄경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인과적 힘을 이해하는 것은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크게 증진시켜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발전적 관점은 생애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발전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Thornberry, 1997). 비교적 최근에 와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의식은 범죄경력의 발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론화를 가져오게 된다(review를 위해서는 Loeber and Le Blanc, 1990을 참조). 다음에서는 이러한 이론들 중 대표적인 이론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돈베리(Thornberry, 1987)는 가장 먼저 이러한 발전과정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한 사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허쉬의 사회결속이론(Hirschi, 1969)과 에이커스 사회학습이론(Akers, 1985)을 바탕으로 비행의 상호작용의 과정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처음의 비행은 청소년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전념, 전통적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되는) 전통사회와의 결속의 약화에서 발생한다. 이 세 가지의 연결이

약화될 때마다 비행의 가능성은 증가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행이 학습되고 강화되는 사회적 환경, 즉 비행친구와 비행가치의 접촉은 비행의 강도와 빈도를 점점 증가시킨다. 게다가 이 상호작용적 과정은 개인의 생애주기를 통해 발전되며 각 연령단계에 따라서 이론적 설명요인들의 중요도는 상이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 초기에는 전통사회와의 결속에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청소년기 중기에는 친구, 학교 그리고 청소년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성인기에는 전통적 활동과 가족에 대한 전념(commitment)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과적 과정이 개인의 생애를 따라서 발전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페터슨(Patterson, 1989, 1991)은 기존 연구 결과의 개관을 통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의 발전과정을 일찍 비행을 시작한 사람들(early starters)과 늦게 범죄를 시작한 사람들(late starters)의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일찍 비행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 아동기의 부적절한 양육에 기인되고, 이것은 후에 학업에서의 실패와 친구집단의 거부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이중적 실패는 비행집단에 참가할 가능성을 높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발전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 초기에 이르러 만성적 비행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기 중기에서 청소년기 후기에 처음 비행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이중적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되고 보다 쉽게

범죄경력에서 은퇴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모피트(Moffitt, 1993, 1997)는 신경심리학(neuropsychology), 낙인이론(labeling theory) 그리고 긴장이론(strain theory)의 입장에서 범죄경력의 발전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페터슨과 유사하게 범죄경력의 발전과정을 두 가지 유형(taxonomy)의 범죄자, 즉 생애지속형(life-course-persistent)범죄자와 청소년기한정형(adolescence-limited)범죄자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태아의 뇌의 발생과정에서의 분열과 같은 신경심리학적 결손들(neuropsychological deficits)에 의해 시작되는 데, 이러한 결손은 경험적으로 언어적, 행동적 결손과 관련된다. 이러한 신경심리학적 결손과 같은 초기의 개인적 차이는 후에 비행에 반영되고, 이것은 사회환경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속되거나 악화된다. 이러한 생애지속형범죄자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이들이 친사회적 대안적 행동을 배울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데, 이것은 종종 친구와 성인들에게 거부되기 때문이다. 모피트는 이러한 생애지속형범죄자의 경우 낙인의 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소년가장, 약물이나 알콜사용, 학교의 중퇴, 손상당하거나 불구가 된 상처, 그리고 시설수용 경험 등은 비행경력의 누적적 지속과정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단계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애지속형범죄는 일종의 사회병리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기한정형범죄자는 늦게 비행을 시작하고 이들의 비행은 청소년기에 한정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다. 생애지속형범죄

자가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데 반해, 이들은 비연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모피트는 청소년기한정형범죄자가 범죄를 시작하는 이유로서 성숙격차(maturity gap), 흉내(mimicry) 그리고 강화(reinforcement)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즉 생물학적 연령의 역할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연령의 역할의 격차가 현대에 와서 점점 벌어짐으로써 생기는 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숙격차로 인해 청소년들은 매우 불안정하게 되고 이것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한정형범죄자는 생애지속형범죄자를 흉내내게 되는데 이때 생애지속형범죄자는 청소년기한정형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역할(magnet role)을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는 청소년들을 부모들의 보호로부터 벗어남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범죄의 부정적 결과에 의해 그들이 사회적으로 강화될 때, 범죄를 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기한정형범죄자는 일찍 범죄경력을 중단하게 되는데, 모피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그만두게 되는 것은 청소년기한정형범죄자들이 범죄를 시작하게 했던 요인들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점점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느끼는 성숙격차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으로는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고, 친사회적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오랜 이웃으로부터 떠나고, 또는 직업을 얻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샘슨과 라우브(Sampson and Laub, 1993, 1997)는 범죄경력의 발전과정에 대해 사회결

속이론과 낙인이론을 중심으로 뜯베리와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이전 범죄의 인과적 영향에 주목하고 이것이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의 과정을 통해 성인범죄를 촉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이전범죄의 효과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성인들을 사회에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적 결속을 약화시키는 효과에 주목한다. 누적적 불이익의 지속성은 범죄성향에서의 개인적 차이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동기의 반사회적 행동과 청소년비행이, 성인의 사회적 결속을 분리시킴으로서 성인범죄를 낳는다는 것이다. 티틀(Tittle, 1988)은 '갠프 리더슨 및 허쉬'와 '블룸스타인과 그의 동료들' 간의 범죄경력에 관한 논평을 통해 범죄 경력의 발전과정에 대한 낙인이론의 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낙인이론에서 범죄 경력의 뚜렷한 두 가지 경로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즉 낙인이 찍힌 사람의 경우 이 낙인이 범죄행동을 향한 지속적인 동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의 생애과정을 통해 높은 범죄율을 범죄를 계속하는 반면,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범죄의 동기가 감소되는 걸 경험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낙인이론적 설명들에서는 그동안의 쟁점이 되었던 연령/범죄곡선의 시간 및 공간적 유사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적 요인(예를 들면,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반응양식이나 사회경제적 특징 등)에 의한 연령/범죄곡선의 변이도 역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외 콘저와 시몬스(Conger and Simons, 1997)는 사회학습이론적 측면에서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에 주목하고, 범죄경력¹의 시작과 지속에 있어서 가족과정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으며, 애그뉴(Agnew, 1997)는 그의 긴장이론을 통해 전통적 이론들을 발전이론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이고 있다.

3. 발전범죄학의 미래: 결론을 대신하여

발전범죄학의 등장은 그동안 전통적 범죄학이 소홀히 했던 분야인 범죄경력¹의 발전과정, 즉 범죄자가 처음으로 범죄를 시작하고 지속 또는 중단하게 되는 종적 과정에 대한 유용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의의는 그동안 이론화에 소홀했던 범죄경력에 관한 방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이론화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론화하지 않는 연구자들'이라는 그동안의 비판(Tittle, 1988)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범죄학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험난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 의한 차별화만으로는 하나의 이론적 전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범죄경력¹의 발전과정을 다룬다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일반적인 설명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범죄이론과 성인범죄이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전범죄학의 미래는 밝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념비적인 연구프로젝트만 보아도 이 분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NIJ와

맥아더재단의 공동후원에 의한 학제적 연구 (“인간발전과 범죄행동에 관한 프로그램”)는 총 8천만달러(한화 약 1,040억)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1988년에 시작하여 2000년대 초에 끝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종단적 코호트 설계를 기초로 횡단적인 효과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연구설계를 가지고 있어, 그동안 범죄학계에서 쟁점이 되었던 많은 부분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 Agnew, Robert. 1997. “Stability and Change in Crime over the Life Course: A Strain Theory Explanation”, Terence P. Thornberry(ed),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Vol. 7, Transaction Publishers.
- Akers. Ronard L.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3th ed.,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Belmont, California.
- Conger, Rand D. and Ronald L. Simons. 1997. “Life-Course Contingencies i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 Matching Law Approach”, Terence P. Thornberry(ed),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Vol. 7, Transaction Publishers.
- Farrington, D. P. 1982. *Stepping Stones to Adult Criminal Careers*, NIJ/NCJRS.
- Gottfredson, Michael, and Travis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oeber, Rolf and Marc Le Blanc. 1990. “Toward a Developmental Criminology”, Michael Tonry and Norval Morris(ed), *Crime and Justice*, Vol. 12.
- Moffitt, Terrie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Vol. 100, No. 4.
- Moffitt, Terrie E.. 1997.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Offending: A Complementary Pair of Developmental Theories”, Terence P. Thornberry(ed),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Vol. 7, Transaction Publishers.
- Nagin, D. S. and D. P. Farrington. 1992. “The Stability of Criminal Potential from Childhood to Adulthood”, *Criminology*, Vol. 30, No. 2.
- Nagin, D. S. and R. Paternoster. 1991. “On the Relationship of Past to Future Participation in Delinquency”, *Criminology*, Vol 29, No. 3.
- Patterson, G. R., Barbara D. DeBaryshe, and Elizabeth Ramsey.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Vol. 44, No. 2.
- Patterson, G. R., D. Capaldi, and L. Bank. 1991.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Debra J. Pepler and Kenneth H. Rubin(ed),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Rowe, David C., D. Wayne Osgood and W. Alan Nicewander. 1990. “A Latent Trait Approach to Unifying Criminal Careers”, *Criminology*, Vol. 28, No. 2.

Sampson, Robert J. and John H. Laub. 1997. "A Life-Course Theory of Cumulative Disadvantage and the Stability of Delinquency", Terence P. Thornberry(ed),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Vol. 7, Transaction Publishers.

Thornberry, Terence P. 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Vol. 25, No. 4.

Thornberry, Terence P. 1997. "Introduction: Some Advantages of Developmental and Life-

Course Perspectives for the Study of Crime and Delinquency", Terence P. Thornberry(ed),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Vol. 7, Transaction Publishers.

Tittle, Charles R.. 1988. "Two Empirical Regularities (Maybe) in Search of an Explanation: Commentary on the Age/Crime Debate", *Criminology*, Vol. 26, No. 1.

Vold, George B., Thomas J. Bernard, and Jeffrey B. Snipes. 1998. *Theoretical Criminology*, Four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8년 국제보안 · 방범기기종합展/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5일간 「'98 국제보안 · 방범기기종합전/서울」을 개최합니다. 전세계 1,000여명의 범죄학계, 정부, 산업계 지도급 인사가 모이는 자리에서 귀사의 제품을 홍보하십시오. 방범보안산업의 최대 관심사가 될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 ▶ 기간 : 98년 8월 25일 - 29일(5일간)
- ▶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 ▶ 전시품 접수마감 : 선착순 마감
- ▶ 문의 : 전시회 사무국(02-551-1264, 1602/719-6931-4)
- ▶ 전시품목 : 경비 · 경호서비스/출입통제시스템/상품도난방지시스템/홈시큐리티/컴퓨터보안/빌딩관리 및 외곽경비 · 침입감시시스템/최첨단수사시스템 · 경찰장비/호신용품/보안 · 방범관련전문미디어 등

주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 한국종합전시장(KOEX) · 월간 시큐리티 월드(Security World)
 후원 : 법무부 · 경찰청 · 중앙일보

일본의 하이테크범죄 대책프로그램

1. 서 언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보급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진전되자, 일본 정부는 1994년 8월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1995년 2월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또, 1997년 9월 동 추진본부에 “전자상거래 등 검토위원회”가 설치되어 1998년 5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곧 이어 최종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인 등 적극적인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하이테크범죄대책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의 하이테크범죄 대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 완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접속이 다발하는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현저해지고 있다. 1996년 5월 미국 회계검사원(GAO)의 보고서는 미국 국방성의 컴퓨터시스템이 1995년 1년간 약 25만 회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통신 네트워크상의 범죄, 테러리즘은 국가안정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일본 정부는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이나 전

자상거래등 검토위원회의 중간보고서에서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실현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 보안범죄대책을 들고, 제142회 국회 연설(1998.2.16)에서 총리대신이 “하이테크범죄 등 정보화를 둘러싼 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표명함으로써 하이테크범죄대책이 일본의 주요정책 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국제적 네트워크의 범주에서는 1997년 6월 개최된 덴버 정상회담의 선언문에서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하이테크범죄에의 대처에 초점을 맞출 것이 선언되었다. 뒤이어 1997년 12월 미국에서 G8법무내무 각료회담이 개최되어, 24시간 신고체제의 설치, 훈련된 인원의 배치, 법제도의 재검토, 산업계와의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이테크범죄에 대처하

2 프로그램 수립의 배경

일본에서는 컴퓨터기술, 전기통신기술을 악용한 하이테크범죄의 발생건수 증가에 더하여, 1997년 이후 인터넷을 매개로 한 컴퓨터파괴 등 업무방해사건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7년에 적발된 대형 전기통신사업 자연연구소에 대한 부정접속 사례와 같은 부정

기 위한 원칙과 행동 계획”이 합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5월 영국에서 개최된 버밍검 정상회의에서는 하이테크범죄대책을 포함한 국제조직범죄대책이 주요의제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하이테크범죄대책에 대하여는 G8법무내무 각료회담에서 합의된 “하이테크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행동 계획”의 신속한 실시가 수뇌차원에서 다시 확인되었고, “증거로서 전자데이터를 취득하고, 제시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적인 범위에 대하여, 그리고 이들 범죄의 증거를 국제적 파트너와 공유함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인터넷 및 또 다른 신기술의 악용을 포함한 광범한 종류의 범죄에 대처하는 것에 기여한다”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나아가, 하이테크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행동계획”의 실행상황을 다음 정상회담에서 보고하도록 각국 각료에게 요구함으로써 향후의 이행강화가 도모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도정보통신사회의 본격적 도래를 목전에 두고, 일본 정부는 하이테크범죄 대책의 새로운 추진을 급선무로 설정하고, 종래 경찰이 진행해 온 시책에 더하여 1998년 및 1999년 내에 다음 중점 시책을 긴급히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3. 사이버경찰의 창설

가. 내셔널센터(HITEC)의 설치

하이테크범죄는 그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

술이 구사되기 때문에, 범행 수법의 해명, 수색, 압류, 압수된 전자적 기록의 해석 등의 수사 활동에는, 정보 통신에 관한 고도의 최첨단 기술지식이 요구된다. 또 하이테크범죄는 소위 사이버 스페이스의 시간적, 지리적 무제약성에 의하여, “범행 현장과 피해 발생장소가 지리적으로 떨어지고, 피해가 동시에 복수개소에서 발생하는” 등 일반범죄와 크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하이테크범죄의 수사는 각급 경찰이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경찰청에서 각급 경찰의 수사 활동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네트워크의 급속한 국제화에 따라 하이테크범죄도 국경을 넘고 있어, 이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각국간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의 확보가 불가결하다.

이러한 하이테크범죄의 특성을 기초로 그 급격한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고, 사이버테러 등의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고도의 최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들 기술력을 통해 각급 경찰을 리드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이버 경찰(Cyber-Police)의 기능을 수행할 내셔널센터(High-tech-crime Technical Expert Center : HITEC)를 경찰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 1) 하이테크범죄에 관한 경찰 각 부문에의 기술지원
 - 현장, 입회 등에 의한 각급 경찰의 하이테크범죄수사에 관한 지원
 - 암호에 의하여 은닉된 정보의 해독기술

연구개발

- 초고속 연산용 컴퓨터 등에 의한 은닉 정보의 해독실시
- 기술적 수사기법의 개발
- 하이테크범죄에 관련된 각급 경찰의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등

2)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하이테크범죄에 관하여 경찰청이 행하는 국제수사협력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 24시간 신고체제
- 외국경찰기관과의 정보 교환

3) 하이테크범죄에 관한 기술적 조사와 분석

- 하이테크범죄에 이용된 기술의 조사와 분석
- 컴퓨터 및 정보 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기술적 조사
-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현황 조사

나. 하이테크범죄 수사체제의 확립

하이테크범죄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 보급과 함께 증가되고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여러 지역에 걸쳐 감행되거나 국제적으로 감행되는 것이 많고, 그 대부분이 광역적,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해커 그룹의 관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 적극적 사건 단서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사건 발생 시에 취할 수 있는 법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커 그룹이 관여하

는 광역적 하이테크범죄의 수사를 맡기 위한 조직으로서, 각급 경찰에 하이테크범죄 수사 지도관과 그 실행조직을 설치한다.

한편 최근 국내외 테러조직이 네트워크를 이용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사이버테러가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테러에 대하여 테러조직의 동향 파악 등 단서정보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수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형테러대책의 일환으로서 주요 지역경찰에 사이버테러 대책반을 설치한다.

나아가, 외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수사협력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된 24시간 신고체제의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또, 각종 교양의 기회를 통해서 하이테크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부정접속 대책법제

컴퓨터네트워크상 이용자의 본인확인 은 오로지 사용자 ID와 패스워드 등 이용자식별 정보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용자식별정보의 도용에 의한 부정접속이 행해진 경우에는, 거의 완전한 익명성의 입수가 가능해지므로 부정접속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가 다발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회경제활동의 의존도의 고조를 감안하면, 하이테크범죄에 의한 피해는 심각할 것이 예상되고, 그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부정접속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 부정접속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것은 G7국가 중 일본뿐이고 이대로 방치하면 일본이 국제조직범죄의 도피처가 될 우려가 강하다. 이러한 정세를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부정접속 대책법제의 정비를 위하여 관계부처가 혼연일체가 되어 연구에 임하고 있다.

- 1) 부정접속(정규 컴퓨터이용자의 식별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그 사람의 이름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에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 2) 소위 ID장부 등 부정접속을 조장하는 업무의 규제
- 3) 부정접속을 방지하고 수사하기 위한 산업계와의 협력(로그화일의 보존 등)

5. 산업계와의 협력

익명성, 무흔적성, 지리적 시간적 무제약성이라는 네트워크의 특성은 하이테크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곤란하게 하고 있어, 경찰력의 강화만으로 향후 예상되는 하이테크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도 정보통신사회의 실현을 위하여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의 관점과 경제적 관점의 밸런스를 도모하면서 양자의 수요가 융합된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 산업계와 경찰의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산업계와의 협력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피해자 상담에 응하여, 홍보계발, 관계 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행하는 정보보안고문을 각급 경찰에 돕과 동시에, 다음 내용의 시책을 ACT2000(Awareness of counter Cyber

Terrorism and other high-tech-crime 2000)으로 명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로 한다.

- 1) 산업계의 하이테크범죄 및 사이버테러 대책에 관한 구체적 조언과 지도
- 2)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하이테크범죄 및 사이버테러 대책에 관한 홍보와 계발
- 3) 하이테크범죄 및 사이버테러의 수사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계와의 대화추진

6. 국제수사협력을 위한 규칙제정

하이테크범죄에 대하여는 범죄관련 정보가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가 전송되고, 복사되고, 소거되기 때문에, 각국 수사기관이 특별히 신속한 국제수사협력을 행할 필요가 있다. 또 하이테크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사과정에서 인터넷에 접속된 단말기로부터 외국에 있는 호스트 컴퓨터내의 데이터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 등 국내 수사가 외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국간의 국가주권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조요청의 실행에 앞서 행해지는 증거보전, 국경을 넘는 수색이나 데이터소재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수색에 관한 실행가능한 해결책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면서 국제적인 검토, 연구개발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수사협력을 위한 규칙제정을 추진한다.

- 警察學論集 vol. 51 no. 6.
- 法律時報 vol. 70 no. 8.
- 法學 세미나 7/1998.
- ジュリスト no. 1136-37.
- 判例時報 no. 1636.
- 判例タイムズ 1998, 6/15, 7/1.
-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vol. 24 no. 2.
-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vol. 16 no. 3.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3 no. 1, 3.
-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998, vol. 558.
- Anwaltsblatt 4/1998.
- Archiv für Kriminologie Band 201 heft 3 und 4.
-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7 no. 2.
-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9 no. 2.
- Computer und Recht 4/1998.
- Contemporary drug problems vol. 24 no. 4.
- Contemporary sociology vol. 27 no. 1, 2.
- Crime and delinquency vol. 44 no. 3.
- Criminology vol. 36 no. 2.
- Deutsche Richter-Zeitung 4/199.
- Deviant behavior vol. 19 no. 3.
- Gol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vol. 145 no. 4.
-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37 no. 1-2.
- Harvard law review vol. 111 no. 8.
-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37 no. 5.
-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8 no. 7-10.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26 no. 3.

새로 들어 온 책

연락처 : 02 - 575 - 5284

-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27 no. 2.
-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 25 no. 2.
-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vol. 27 no. 1-2.
-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3 no. 4.
- Juristische Arbeitsblätter 5/1998.
- Juristische Ausbildung 5/1998.
- Juristische Rundschau 4/1998.
- Juristische Schulung 5/1998.
- Juristen-Zeitung 53.
- Kriminalistik 4/1998.
- Kritische Justiz 31.
- Medizinrecht 16.
-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52.
- Monatsschrift für Kriminologie und Strafrechtsreform 81.
-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vol. 73 no. 3.
- Neue Justiz 4/1998.
-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5/1998.
-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18 no. 2.
-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53.
- Österreichische Richterzeitung 76.
- Die Polizei 4/1998.
- Social justice research vol. 11 no. 1.
-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61 no. 1.
- Sociological theory vol. 16 no. 1.
- Sociology vol. 32 no. 2.
- Stanford law review vol. 50 no. 4-5.
- Strafverteiger 5/1998.
-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46 no. 5.
- Violence and victims vol. 13 no. 1.
- Wistra 17.
- 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31.
- Zeitschrift für Soziologie 27.
- Zentralblatt für Jugendrecht 4/1998.

단행본

- 부정부패의 사회학 : 문민 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 이은영, 김창국, 강경근[공저] - 서울 : 나남출판, 1997.
-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 법원행정처[편] - 과천 : 법원행정처, 1995.
- 獨逸의 倒産法 / 한국법제연구원[편] -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1998.
- Shame : the exposed self / Michael Lewis. - New York, 1995.
- Shame and pride : affect, sex, and the brith of the self / Donald L. Nathanson. - New York ; London, 1992.
- Self-conscious emotions :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 June Price Tangney, Kurt W. Fischer [jt. ed.] - New York ; London, 1995.
- Umweltstrafrecht in mittel- und südeuropäischen Ländern / Günter Heine. - Freiburg i. Br. : Max-Planck-Institut, 1997.

- Child abuse : some reflections based on the situation in six European countries / Renaud Vill. - Rome : The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1995.
- Die behördliche Genehmigung im strafrechtlichen Deliktsaufbau / Steffen Fortun, Berlin, 1998.
-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 Terence P. Thornberry[ed.], 1997.
- Thinking about crime./ James Q. Wilson. - Revised ed, New York, 1985.
- Evaluating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 Ellen G. Cohn, David P. Farrington, Richard A. Wright [jt. ed.], Westport, 1998.
- Drunk driving enforcement & investigations ; learn the four D's (detection, dexterity, detention, detailing) / Charles Wm. Dahlinger, Illinois, 1995.
- Criminal careers and "career criminals" / Alfred Blumstein, Jacqueline Cohen, Jeffrey A. Roth [jt. ed.], National Academy Pre., 1986.

통권 제47호(1998년 5/6월호) 현상퀴즈 당첨자 및 정답

총 42통의 응모엽서 중 정답은 24통으로 정답자 가운데 엄정한 추첨을 거쳐 4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첨자〉

- 서울시 광진구 중곡 1동 242-28 추승호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대우A 203-703 정해동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42-4 한광용
- 경북 영일군 송라면 대전리 42 안영태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서상품권)을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구	조	조	정		프	라	하	
사		광		사	랑		수	석
일	수		불		스	콜		좌
생		강	감	찬		드	골	
	산		증		대	계		줄
여	울	목		동		임	산	부
	림		인	동	초		소	
상		구		주		온		만
장	마	전	선		여	고	괴	담



함께 풀어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가로열쇠>

1. 최근 ○○○가 150-200만명이라고 하죠
3.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
6. 미국에서 여자 골프계를 휩쓸고 있는 선수
8. 우리들 가정에서 사용하는 水
9. 유원지주변에 민가에서 숙박하는 집
11. 운동경기 등에서 새로운 사람
12. 영화나 연구내용의 주제를 이르는 외래어
14. 아버지와 재혼한 어머니
16. 이자에 또 다시 이자를 붙이는 것
17. 음력 팔월 보름날은 추석, 다른 말로는?
19. 자기의 허물이나 죄를 스스로 말하는 것
20.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곡을 하는 소리
22. 속담중에 ○○○ 담 넘어 간다
24. 도로, 철도 등 새로이 완성되어 통합
25. 남극에만 사는 새우이름
27. 간호사가 엉덩이나 팔뚝에 약액을 넣는 일
29. 지극한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다

31. 대한민국 국기
32. 여름날 밤에 빛을 내는 곤충

<세로열쇠>

1.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
2.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 간다
4. 전임자와 후임자와의 업무를 주고 받죠
3. 복잡한 도로는 경찰의 교통○○가 필요하죠
5. 영국 스티븐슨의 장편 모험소설(Jim, Silver)
7. 백화점에서 물건의 값을 낮추어 판매하는 것
10. 세균의 총칭
13. 아들을 낳으면 금줄에 이것을 달죠
15. 많은 조각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그림
17. 오래된 물건
18. 흔히 허리가 굽으면 ○○○이라고 하죠
21. 저축을 하면 ○○가 붙죠
2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술은 ○○와 막걸리
24. 독특한 특징이나 성격
26. 여러 명이 이어서 달리는 것
28. 비상○○, 긴급○○, 산○○ 등
29. 남을 알고 자기를 안다는 말(지피○○)
30. 텔레비전 드라마의 연출자(프로듀서, 감독)

응모요령 : 풀이난의 빈칸을 채운 다음 관제엽서에 붙여 연구원 출판실에 보내주시는 분 중에서 정답자 4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마 감 : 1998년 10월 14일(수)까지

보내실 곳: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

〈 범죄일반 〉

- 89-01 메스암페타민사범의 실태와 대책
- 89-04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 89-07 민생치안범죄규제의 전략과 이론
- 90-05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0-07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90-08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90-13 유흥업소 주변에서 습관중독성물질 오·남용 실태
- 90-16 정신질환자의 범죄성에 관한 연구
- 90-22 낙태죄와 간통죄에 관한 연구
- 90-26 강·절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0-23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 91-01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 91-02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1-05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91-07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1-09 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
- 91-13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 91-15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 91-17 약물남용범죄와 약물공급범죄에 관한 연구
- 91-25 한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1-26 사회구조와 범죄
- 91-28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 91-30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 91-32 약물남용의 실태와 통제방안
- 92-05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2-06 인신매매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2-12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관계
- 92-13 성인남녀의 약물남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92-14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 92-15 방화범죄에 관한 연구
- 92-28 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2-30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
- 93-05 범죄발생의 추세분석
- 93-17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 93-18 도시성장과 범죄
- 93-23 사회규범의 준수요인에 관한 연구
- 93-2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 93-31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 94-03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 94-08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 94-22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 94-25 뇌물죄에 관한 연구
- 94-27 증권범죄에 관한 연구

- 94-30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 95-02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95-04 상점절도에 관한 연구
- 95-07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5-08 국내체류외국인의 범죄피해실태 및 보호방안
- 95-10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 95-14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 95-16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 95-17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 95-24 범죄신고 증진방안
- 95-26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 95-27 비행의 조기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 96-01 유엔 범죄방지프로그램
- 96-04 서울시 자가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관한 연구
- 96-06 서울시민의 기초질서준수에 관한 연구
- 96-08 한국 언론의 범죄보도관행
- 96-09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 96-11 사회계층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 97-02 인터넷과 형사정책정보 검색
- 97-05 차량절도의 실태와 대책
- 97-0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 97-07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
- 97-0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 97-09 불법체류 외국인의 실태 및 대책
- 97-11 컴퓨터를 이용한 몽타주 제작법 개발
- 97-17 정보범죄의 현황과 제도적 대처방안
- 97-1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97-21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964-1996

〈 소년범죄 〉

- 89-0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 90-01 소년원교육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
- 90-09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 90-10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연구
- 90-11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연구
- 90-12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 90-14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
- 90-20 가정교육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 90-19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91-08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 91-11 약물남용자의 치료상의 문제점과 대책
- 91-18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91-22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91-23 청소년음주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91-24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92-08 학교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92-18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92-19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분석
- 92-21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
- 92-24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 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
- 92-31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93-01 비행소년 감별기준에 관한 연구
- 93-03 소년범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 93-04 음란물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
- 94-02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 94-04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 94-07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 94-10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94-12 소년원생의 생활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 94-15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치료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94-24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에 관한 연구
- 94-31 소년원 교정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95-01 한국의 청소년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 95-03 소년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95-18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 95-23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성장프로그램
- 95-30 독일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 96-02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예방전략
- 96-03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 96-12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96-14 유엔의 국제조직범죄 규제 방안
- 97-01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 교정 보호 >

- 89-02 개방교도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89-06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 90-27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90-28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 91-06 재소자 분류수용제도에 관한 연구
- 91-10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 91-14 교정시설의 교화활동에 관한 연구
- 91-19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91-27 교정교화분야의 민간인참여에 관한 연구
- 91-33 누범수형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 92-03 부정기형제도에 관한 연구
- 92-04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92-09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 92-20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 92-26 누범에 관한 연구
- 92-29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연구
- 93-08 강력범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93-13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 93-16 소년 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 93-33 사설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94-01 보호위원의 보호관찰활동에 관한 연구
- 94-05 수강명령제도와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 94-06 개방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 94-20 재산범출소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
- 94-21 재소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 94-23 처벌의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 94-32 가석방자와 만기출소자의 재범비교
- 95-13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 95-19 외국의 수형자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 95-31 교도작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 95-32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 96-05 수용자 교정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96-16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97-03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 97-10 수강명령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97-14 가석방심사체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법과 형사절차 >

- 89-05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 89-08 정보조직이론적 관점에서 본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 90-02 수사경찰의 근무실태
- 90-03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 90-04 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범능력 증대방안
- 90-06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
- 90-15 수사경찰의 전문화에 관한 연구
- 90-17 파출소단위 방범활동 개선방안 연구
- 90-18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
- 90-21 각국의 구속제도
- 90-24 강제수사절차의 개선방안
- 90-25 질서위반법
- 91-03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91-04 공동주택의 범죄방어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
- 91-12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 91-16 강도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 91-20 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91-21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 91-29 경찰활동과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 91-31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 91-34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및 개별적 양형단계에 관한 고찰
- 91-35 조세범처벌 관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 92-01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 92-02 현금다액취급업소의 방범대책 연구
- 92-07 현행 환경범죄 처벌법규의 문제점과 대책
- 92-10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 92-11 양형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 92-16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 92-17 현행 약물남용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 92-22 유전자 감정의 범죄수사응용에 관한 연구
- 92-23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
- 92-25 남북한 인적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 92-27 미국의 유죄담변협상제도
- 92-32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이론상의 문제점
- 93-02 약물범죄수익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 93-06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 93-07 국선번호인제도에 관한 연구
- 93-09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
- 93-10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 93-11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 93-12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
- 93-14 과학적 수사방법과 그 한계
- 93-15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 93-19 벌금형의 운용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 93-20 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
- 93-21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에 관한 연구
- 93-22 돈세탁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연구
- 93-24 안락사에 관한 연구
- 93-25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 93-27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참여
- 93-28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93-29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 93-30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 93-32 절도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 93-34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 94-09 유럽의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 94-11 행정형법상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 94-13 주택지에서 범죄발생공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94-14 각국의 테러범죄 대응책에 관한 연구
- 94-16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4-17 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
- 94-18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 94-1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 94-26 공산권붕괴에 따른 동구제국 형법의 변화
- 94-28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 94-29 국제환경형법
- 94-33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방향
- 95-05 범죄인인도에 관한 연구
- 95-06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 95-09 교통범죄양형에 관한 실태분석
- 95-11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95-12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
- 95-15 형사특별법의 제정실태와 개선방안
- 95-20 형사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 95-21 국제조직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95-22 형사절차와 정보보호
- 95-25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 95-28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95-29 자백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96-07 법인범죄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안
- 96-10 노역장유치제도에 관한 연구
- 96-13 독일 행형제도에 관한 연구
- 96-15 형사사법기관편람
- 96-17 제조물의 하자에 의한 형사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 97-04 각국의 검찰제도
- 97-12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 97-13 구속영장심사와 피의자심문
- 97-15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유사처벌조항 정비 방안
- 97-16 체제전환국가들의 범죄양상 및 형사정책적 대응
- 97-19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 97-20 체포제도에 관한 연구

〈 기타 자료집 〉

- 형법제정자료집
-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 정신감정과 치료감호자료집
- 양형연구자료집
- 형사정책문헌목록 I
- 형사정책문헌목록 II
- 형사정책(번역총서 1)
- 양 형 론(번역총서 2)
- 형사정책(기본이론서)
- 형사정책연구(통권 제1호 - 제34호)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한국형사정책연구원